

제417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19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상정된 안건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6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6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6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6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6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6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6

○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우리 소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을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한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한규 위원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법안소위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성실히 관련 법령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힘든 중기 업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중기소위 법안소위에서 모처럼 일하게 됐는데 중기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어려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송재봉 위원 중기소위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저 스스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개선하고 또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미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입니다.

○ 김종민 위원 세종시갑의 김종민입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가, 법안소위가 처음 열렸습니다. 제가 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특별히 지원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흔히들 기술혁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미래가 이 기술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필요한 것은 돌파를 해야 되고 혁신에 앞장서야 되고 또 그 혁신의 부작용 내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지금 제일 큰 이슈인데 사실 그 점에서 본다면 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기술혁신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최전선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법안소위 활동에 임하겠고요.

한 가지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건의차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우리 국회법에 가능한 한 월 고정적으로 법안소위를 열게 돼 있으니까 법안소위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양 간사님들께서 꼭 국회법 취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법안소위를 열 때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법안소위를 잡는 것은, 특별하게 의결을 긴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 있거나 무슨 시효나 일몰 문제가 있어서 전체 회의에 의결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월요일을 피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말을 거쳐서 월요일 날 보좌진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화요일 이후에 회의를 해야 회의의 효율과 내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건의를 드리니까 간사 협의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드립니다.

행정실에서 참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매달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의는 월요일 날을 좀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위원님.

○ 송재봉 위원 조금 전에 했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하셨구나.

오세희 위원님.

○ 오세희 위원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고 중기소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민생을 쟁진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위원님들의 명패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장은 아시겠지만 골목상권이 많이 어렵고 또 제도가 뒤따르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어떤 현안들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논의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은 현장하고 같이 가는 제도와 법이 논의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민생을 좀 쟁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가 95.1%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라도 여태 까지 못 했던 것들을 좀 차근하게 쟁여서 이해해 주시고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입장은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허종식 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요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민의 짐을 덜어 주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웅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님.

오늘 뭐, 성이 영 헷갈리네……

(웃음소리)

○박상웅 위원 태어나서 김씨 성은 처음으로 한번 불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밀양·의령·함안·창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지방 산단도 있지만 또 농민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그 견인차의 원동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실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삶과 더불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먼저 전체회의 때도 제가 한 말씀 드린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1985년, 8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농가가 1000만 농가예요. 지금은 200만 농가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산업구조도 바뀌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갈 곳은 자영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실제적인 소비력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줄어들고 있고 또 봉양해야 될 어른은 많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짐은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과잉 진출이 돼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언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급속도로 사회구조가 바뀌고 산업화 이후에 이런 문제는 언제나 올 수 있는 문제였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오늘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원도 아낌 없이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눈앞에 현실은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듬어 안고 이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눈물을 닦아 주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소위원회의 아주 적극적인 책임감과 역할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잘 모시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박상웅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 권향엽 위원 반갑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서 대표로 있습니다. 권향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부터 유니콘기업까지를 다 함께 아울러야 하는 그러한 소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시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정말 현미경 같은 미세한 보살핌도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여러 쿠팡 사태나 티메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춰서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 플랫폼에서의 소상공인들 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잘 정비되어야 할 그러한 영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범들이 우리 중소벤처소위의 그런 범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세한 시각으로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함께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유니콘기업들도 더 잘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살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권향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름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 권향엽 위원 힘을 빼면 됩니다. 발음할 때 힘을 빼면 예쁘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곽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에 당선된 곽상언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배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TV를 보면 늘 대기업만 나오고 중소기업이 광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고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해외의 대기업들은 실제로 흥망성쇠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흥이 있고 망한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되기 참 어렵고 대기업의 지위가 늘 유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이 실제로 살아야 국가가 역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법안들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을 많이 보호하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우리 소위원회에는 아주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참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to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0)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8)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7)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6)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8)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3)

(14시19분)

○**소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의11제1항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위반행위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위반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의11제2항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조성 및 제공과 관련된 물건, 설비의 폐기,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침해 우려만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여 남소의 여지가 있는 점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1대 국회 논의 사항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넓은 수탁·위탁거래에 금지청구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하도급거래에 먼저 적용하거나 최소한 동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자료 4쪽에는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일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최근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하거나 또는 하려는 자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경우 이래서 상당히 좀 애매하고, 미래에 그런 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에 자칫 그게 이런 기술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남소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그냥 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공정거래법에도 그런 규정을 108조 3항에 규정해서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담보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남소를 예방하는 규정을 뒀는데 우리의 경우는 안 둬도 괜찮겠다 하는 전문위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정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남소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정부와 전문위원이 각각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우선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남소를 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소가 설령 있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에 있는 그 규정을 도입하여서 수정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에서 하실 말씀……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별법에 이러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은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이 법에 따로 담보제공명령을 두지 않아도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김한규 위원님.

○ 김한규 위원 이런 금지청구권은 항상 남소 우려는 있습니다. 분명히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정거래법하고 이 법의 차이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에 대해서 다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꼭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지는 한쪽이 협상력이 더 높은 경우만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쪽이 대기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소의 우려가 있어서 담보 제공을 하는 게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입법이 되었던 거고요.

제 생각에 이 법이라든지 기존의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특히 법 이런 것들은 그런 남소 우려가 구조적으로 좀 덜한, 그러니까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없거나 열위에 있는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담보제공명령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남소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해소가 됐습니까?

○ 이종배 위원 이 규정이 없어도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니까 구태여 규정을 안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특히 대·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통과시키고 나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규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옳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인규 의사일정 제2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그리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근거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일반적으로 표시되는데 이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개정안에도 이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률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험 성격의 문제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제료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정부는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이 법을 동의는 하는데요.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전통시장에 국한하는 건 뭔지요? 정부 측.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 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어쨌든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일단 대상이 됩니다.

○오세희 위원 전통시장 주변에 골목상권이 비슷한 상황…… 길 하나 건너고 옆집이 골목상권인데 이분들의 고려가 필요하지, 유독 소상공인이 다 전통시장인데 화재공제 보험료까지 전통만 하고 옆집은 안 하고. 아예 골목상권 어느 계층을 해서 소득, 매출 추이 몇 %를 지원한다 이런 건 몰라도…… 꼭 소상공인 중에, 과거에는 인식이 덜 됐다고 하지만 요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같이 있는데 그걸 거기에만 국한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에 맞으면 자율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상점가에 대해서 지정을 확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 공제료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상점가가 골목상권인데 꼭 상점가라 해 가지고…… 지금 왜 나왔냐면 아까 오전에 질의했듯이 제가 이따가 말하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이 목표액에 못 미치니까 상점가라고 해서 확대를 하자는 취지인데, 그걸 가지고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상점가가 어차피 골목상권인데 그걸 지정해서 확대를 좀 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상점가라고 해도 골목상권인데 그걸 꼭 상점가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위 몇 %를 지원하는 걸로 똑같이 소상공인 쪽으로 하면 전통시장도 해당이 되고 골목상권도, 옆집도 건넛집도 되는 건데 그러냐. 제 말은 그런 거거든요, 질의 내용이.

그러니까 똑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상점가, 전통시장…… 상점가는 어차피 골목상권인데 몇 개 이상이 모이면 상점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걸 그냥 골목상권, 전통시장 매출 추이 하위 몇 % 미만 이렇게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차관님,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했는데, 상점가 지정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웬만하면 다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오세희 위원님 말씀은 뭐냐 그러면 골목상권도 다 어렵잖아요, 불나면. 제 지역구인 동구 송림동의 현대시장에서 작년에 불이 났었는데, 즉각적인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거기만 불이 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골목상권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지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일리 있는 지적으로 보여서…… 골목상권까지 확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점가 지정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중기부와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마저도 저희 중기부가 자체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자체가 자율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래서 일정 정도 상점이나 점포가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도 단독 상가라든지 밀집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 제도의 어떤 설계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도 저희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상인들이 이 공제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가입 독려를 우선 하면서 추후에

상점가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도 추가적으로 상점가 지정이라든지 또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보상금 수준을 지금 3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자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것 5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현재 가입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면 다시 오세희 위원님 말씀을 옮기면 전통시장, 상점가가 된다고 치면 골목상권의 골목집…… 골목길이든 상점가 이런 데 다 어려운데 그런 데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일단 이렇게 시행해 보고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우선은 사실 정부 재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확대를 하기는 아마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법률 개정안처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비교적 밀집도가 좀 낮은 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다시요.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먼저 관련된 것 말씀……

○**소위원장 박성민** 예.

○**오세희 위원** 내가 아까 말한 게 지금 이해가 덜 됐나 본데요. 차관님, 내가 말한 상점가라는 것은 어차피 골목상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늘리려니까 법을 개정을 못 하고 상점가라는 것을 자꾸 넓히고 확대를 하는 건데 그걸 왜 거기서도 상점가라고 하냐 이거지요. 골목상권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매출의 몇 퍼센트를 주는 것 이렇게 가꿔야지, 상점가나 골목상권이 똑같은데 상점가 지정, 그것은 한마디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지요. 상점가 상점가만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골목상권으로 바꾸면 안 되냐 이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체계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구역과 상점가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게끔 하고 있고 그 지정된 상점가 그다음에 전통시장구역 내에 있는 점포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법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서도 그렇게 상점가를 계속 추가로 추가로 해 가지고, 골목상권을 안 쓰고 상점가라고 쓰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냥 골목상권이라고…… 거기서는 골목상권을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상점가를 또 지정해서 그것을 하겠다, 거기에 또 확대를 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법률에 골목형상점가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새로운 형태의 골목상권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용어를 법률에 별도로 포함을 시켜서 재정의를 한 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구역을……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법에는 아는데 그것을…… 이 화재보험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말을 바꿔서 그렇게 넓히면 어찌나 나는 그 얘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굳이 골목상권인데 상점가라고 해야 되냐, 그럴 수가 없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허종식 위원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저렇게 자꾸…… 아까도 그렇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말을 자꾸…… 사람 말을 막하게 하는지. 이상하네, 진짜.

○김종민 위원 소상공인 지원법에다가 추가로 개념 정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얼마든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구역 단위로 지원하는 그런 법제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이 있고 상권 활성화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법률에 따라서는 구역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기본법이나 소상공인 지원 법률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포괄적으로 갖자는 얘기고요. 만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일 것 같으면 매출로 잡아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진짜 줄 사람들한테 지원하자는 저는 그 얘기고요.

전통시장만 불나는 게 아니라 요즘 불이 다 나니까, 어차피 골목상권도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오래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좀 하자. 제가 이 법안 발의를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것 어차피 좀 확대해야 된다.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들은 계속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는 화재보험을 왜 안 주냐? 왜 전통시장만 하냐?’ 그것이 많이 논의가 돼서 요구사항, 여야의 정책 협약식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점가라는 것을 여기서 꼭 안 써도 되는데, 그걸 골목상권으로 해서 전체를 좀 하면 어떠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적다면 매출로 잡아 가지고 골목상권은 매출이 몇 퍼센트 미만이다, 전기요금 하듯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좀 합리적인 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얘기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는 어떻게 보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저희가 국회의 심사를 받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예외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꼭 골목형상점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도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먼저 의견인데요. 법률이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고 공제료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다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나중에 정부가 어떻게 대통령령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정해진다고 그냥 믿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선택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정해야지 이렇게 거의 모든 사항을 다 위임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인데 지금 의원입법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논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아직 시행령안을 고려해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대략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화재공제기금에 대해서 대략 한 10억 정도의 기금 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화재 공제료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제료의 한 70~8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예산 규모는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를 확인해서 짐계를 해 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요. 아까 처음 얘기하신 것은 이미 있는 24조의2 1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러면 광역자체가 지급하는 것들을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가입률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야 될 금액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의 부담 규모 그다음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늘어날지 이 정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 보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 개정 법률안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법에 근거를 만드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될지는 저희가 좀 추계를 해 봄야 되는 부분인데요, 추계를 해 본다는 것은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서 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한 공제료를 지원하게 되면 공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다 한 거고 그 정도는 미리 수치로 예상을 하고 법안소위 하는 데 갖고 오셔야지요. 그냥 미리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후 계산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그러면 얼마인지 그 정도는 계산을 해 와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것은 제가 빨리 계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토의견 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넣자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문구인데 이상하게 입법례들이 몇 가지가 생겨서 그런데, 법적으로 먼저 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예산 항목들이 정해지는 거지 예산 범위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법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못 하니까 불안해서 자꾸 이런 문구를 관행적으로 넣는데, 혹시 차관님 보실 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송재봉 위원님.

○**송재봉 위원** 지금 화재공제 가입률이 30% 정도라고, 그 정도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화재가 낫을 때 보상금이 건물·동산에서 3000만 원 정도이고 영업 중단에 대한 손실보상비 1일 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가입해야 될 메리트가 낫다 이런 문제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보상금을 1억 수준으로 높이고 점포 휴업 일당도 한 10만 원 정도로 높여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화재공제기금의 운영 방법도 개선을 해서 전체 보상한도 좀 높이고 또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송재봉 위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8쪽입니다.

개정안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하급기관이나 피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통보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체적인 내용 변경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11쪽에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이 있고 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은 부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것은 저희 정부가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곽상언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보고에서 통보로 바꾸면 실무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한 법령들이 꽤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에서 보고로 규정을 했으며 앞으로 통보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실무상 어떤 차이가 있길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은 보고라고 하는 용어는 관행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로 하고 있고 또 보고의 행위에는 보고를 접수한다고 해서 실제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어떤 수락의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통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용을 듣건 듣지 않건 중요하지 않은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보다 수평적이고 보다 협력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실질적으로 실무상 차이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행정 관행상으로는 보고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것을 보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곽상언 위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차이가 뭐가 발생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실제……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서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통보서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용어의 차이만 있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러니까 행정기관끼리는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 접수하는 기관이 그 내용을 수령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통보라고 하는 것은 통보하는 자가 상대방의 수령과 관계없이 그냥 그 공문을 송부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아니, 통보가 되더라도 송달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서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게 통보라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곽상언 위원** 나중에 입증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급기관으로 봤다는 얘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아니고 시도·시군구가 하나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그렇게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과거에는 통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용어를 통일적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법뿐만이 아니고 정부 내의 한 80개 법률을 일괄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행정을 해 왔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실무상 차이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실무상 차이를 뛰어넘어 관점을 바꾸겠다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통보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법적 용어가 보고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점들을 고치려고 하는……

○**곽상언 위원**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행정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통합 조정해서 위원님들과 또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팬참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2쪽입니다.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가맹점의 등록, 준수 사항, 등록의 취소 등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지 말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면 백년소상공인의 경영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 활성화에 따라 관련 매출 증진 및 내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내용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시행일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날이 이미 지났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합니다.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이…… 지금 과도하게 발행 목표를 잡다 보니까, 작년에 목표가 4조였지요? 발행 목표 대비 2조밖에 못 했고, 2조 한 8000억 정도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오세희 위원** 올해가 5조인데 지금 그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차관님이 한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발행 목표 대비 발행을 4조인데 2조 8000억밖에 못 했고, 올해가 5조인데 그랬더니 97%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제가 좀 전에 오전에 전체회의 때……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판매지요, 판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판매입니다.

○**오세희 위원** 판매가 97%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판매와 그다음에 회수……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판매를 하고 난 뒤에 회수된 비율이 57%고……

○**오세희 위원** 저는 발행 목표, 그러니까 예산을 말한 건데, 예산이라고 분명히 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혼선을 야기하고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막 두 번씩 세 번씩 강조해도 되는 건가요,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왜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되니까 당사자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상인협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5조, 4조를 못 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5년 동안 부정 유통이 적발된 것만 536억이에요, 깅. 그래서 이 온누리상품권을 다 판매를 못 하는데도 왜 계속 예산을 5조, 4조 이렇게 늘려야 되나. 그래서 그쪽에서도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다, 예산을 우리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어차피 자기들이 다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상점가라는 것을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법을 못 바꾸니까. 그래서 아까 상점가를 제가 계속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을 골목상권 다 쓰면 좋은데 또 전통시장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 거기서 약간 의용해서 상점가라는 것을 자꾸 늘려서 온누리를 쓰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부정 유통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가맹점 확대 시 부정 유통 그런 것들의 재발을 막는 게 우선이다, 지금 이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용하는, 넓히는 것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해마다 한 1조 2000억~3000억 원을 못 쓰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실적 채우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다만 사용의 취지하고 달리 부정 유통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지류가 아닌 온라인, 모바일로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서 부정 유통이나 아니면 목표액을 많이 올리지 않는 것,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것 그게 이것보다 먼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표액 대비 발행액이 한참 미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난 뒤에 회수가 되는 비율은 상당 비율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잘 유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통시장구역 내에 있는 점포 그리고 전통시장 바깥에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 개선을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목표를 잡을 때는 그런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온누리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요. 그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카드형이라든지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주어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모바일이 지금 몇 % 하고 있나요? 모바일 몇 %, 11%, 14%지요? 그렇지요? 그게 모바일 모바일, 말은 모바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모바일 대략 한 10%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10%잖아요. 어차피 지류예요.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로 부정 유통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심각해요. 지금 본인이 4조에서 2.8조니까 이걸 많이 했다 그러는데 이것 개선을 할 점을, 특히 진짜 이거는 어떤 큰 대책이 마련돼야지 온누리상품권의 깡 업자들이 보통 300억…… 이쪽에 300억 막 넘어와 가지고 깡 업자들이 4%에서 10%를 받으니, 그게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중소벤처부도 알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도, 전통시장에서도 이것을 막아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

산 늘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데 중기부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참 나는 답답합니다. 이게 말을 하면 꼭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부정 사용이 안 되게 하고 확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데 하나 일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급급해서 한다는 게 왜 이렇게 전반적인 계획안이 체계적이지 않은지, 취지하고 달리 이게 참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차관님, 지금 오늘 논의하는 법안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들을 더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발행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중기부 입장은 다 찬성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도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된 법률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도매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매시장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확대한다고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기본적인 발행 목적을 생각하신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백년소상공인도 어려움은 동일한데 일단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그분들의 불만을 잠재우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거나 그런 노력을 있으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은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분들은 조심스럽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제한된 발행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에서 써야 될 부분들이 다른 권역, 다른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포션 이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발행 규모를, 아까 오세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발행 규모를 좀 늘려서 전통시장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전통시장 바깥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라든지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이 활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좀 기여를 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바람직하면 그렇게 꼭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법안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18쪽입니다.

제5항과 제6항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박지혜 의원안은 임대료 및 수도요금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법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지원을 추가할 경우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에 따른 경영 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과 재정 소요의 규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담 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 특히 전기나 가스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부담은 경기 변동에 따라 체감도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법률에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기와 가스와 관련된 그런 개별 법령의 제도에 근거한 요금 할인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처럼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작년에는 연매출 3000만 원에 20만 원,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기금을 2500억 정도 한 거고, 올해는 그게 너무 가이드가 낮다. 그래서 6000만 원, 연매출 6000이면 한 달에 매출이 500이에요. 500에 20만 원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엊그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얘기하셨고 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를 지금 지원하던 거를 연속성 있게 하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덜 될 때는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런 거고, 다만 지원법에 근거를 좀 넣어 놓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전통시장은 화재 하고 왜 소상공인들은 이게 안 되냐 이런 건데, 정부의 그런 논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법안까지 만들 필요 없다 하지만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야지 근거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 확보도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항상 열어 놓고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냉방비 이런 게 폭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법안에 지원 근거를 넣어 놓고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 다만 지원 근거는 연속성을 좀 하자. 20만 원 주는 거거든요, 20만 원. 그거 다 주는 게 아니고 연소득 6000만 원, 연매출 6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소득자면 거의 취약계층이지요.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면 500만 원 매출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소상공인이 아니라 생계형, 아주 열악한 생계형의 가게들을 지원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 이게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기부는 지금 현행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현재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반대 근거가 되려면 충분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은 연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지원되는 금액은 2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252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매출액 6000만 원이고 지원액 20만 원이면, 매출액 6000만 원이면 한 달에 매출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인 기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해 드리면 참 좋은데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물론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는 25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특정하다 보니까 매출액 6000만 원 정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단기 쳐방책으로는 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600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전기요금조차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요금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소상공인도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액 6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일반적으로 얼마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계신지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이 지원액이 지금 산정이 되는 것인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 것은 소상공인의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차가 커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곽상언 위원 다음에 매출액 6000만 원, 지금 지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매출액 6000만 원의 소상공인이 1년간 부담하고 있는 평균 전기요금이 얼마고 한 달 동안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어야 되고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는지 자료를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오세희 의원님이나 박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안 자체는 사실은 지금 올해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지원의 기준이라든가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차관님께서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 정부안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전례 없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월매출액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그런 소규모인데 사실 올해 같은 폭염에는 전기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때보다 더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 자체가, 지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기후위기로, 저희들이 추정컨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혹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점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오세희 의원님이나 박지혜 의원님께서 법안에 명시한 대로 대통령령으로 자세한 것은 정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마련해 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의 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은 예산과 법률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또는 수도·가스 요금의 재정 지원 사업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이라고요. 이 지원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왜 내년 202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직접 지원은 사실 금년에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했던 것이라고요. 이제 경기가 조금 풀리게 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게 되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한 직접 지원 말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조금으로 일부 커버를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리융자 같은 것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사업은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향엽 위원 요즘 보면 사실은 고금리·고물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소공인들의 수익은 훨씬 더 열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올해의 특수 상황은 어떤 것이고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하는 판단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상황의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재정 지원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 감면 또는 할인을 많이 해 줄 수 있게끔 해당되는 법률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법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차관님, 한국전력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시고 하시는 내용 같아요. 지금 한국전력이 계속 이렇게 감면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한국전력이 일정 금액이라도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올리게 되면 전 국민이 다 동일하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니 그거보다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한테는 지원을 해줘서 결국 한국전력의 부담은 늘리지 않고 비용 부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원 조항들이 들어오는 거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가 엄청 많은데 공공서비스 감면, 할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지금 우리 공기업의 재정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으니까 아셨겠지만 2022년에도 한국전력이 사채발행한도 늘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의 정부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중기부가 정부 예산안을 짤 때 아예 이 항목은 빼고 초안을 제출했단 얘기입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실 때? 아니면 기재부가 깎은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중기부가 먼저 뺐단 얘기인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새로운 항목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렵지요. 국회에서 아무리 늘려 봤자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예산 항목 편성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넣어서 매년 발생하는 정부 부담들은 아예 정부 초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넣는 거고요. 다만 정부에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이거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연간 매출액 2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임시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시행령을 정부가 어떻게 정할지는 법이 통과되면 그건 정부가 논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나중에 논의하면 된다 내지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해 줘 가지고 지원을 못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올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안 한 책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제가 싫어하지만 이건 정부 부담이 클 수 있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기부가 부동의한 이유를 보면 이미 현행법에 근거해서 올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 의견도 현행법에 따라서 지원이라 별도의 법적 근거 신설의 실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한시적으로 계속 지급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법안을 부동의 했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예산에도 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지요.

중기부 의견이 현행법에 따라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신설 법안 필요 없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은 현행 전기료 특별지원 사업도 현행법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고, 작년에도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된 사안이었는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기료 특별지원 사업이 반영되어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에 따라서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신설했던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웠던 거고. 그런데 이런 아주 포괄적인 규정으로 매년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두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지금 제9조의 1호부터 5호까지 되게 디테일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하러 필요합니까, 6호의 포괄적 규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소상공인한테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하에서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법안이지만 아까 김선교 의원님이 내신 법안은 이미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으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당 의원 법안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하고 야당 의원이 낸 것은 동일한 이유인데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반대하실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전기료 또는 수도·가스 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김한규 위원** 안 하셨잖아요. 올해 예산편성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웠으면 저희가 수긍할 수 있지요.

○ **허종식 위원** 근거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거만 만들고 대통령령으로 하자.

○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이종배 위원님.

○ **이종배 위원** 차관님, 제가 21대 때 국감 등을 통해서 요청했던 게 소상공인용 전기요금 특례제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부분들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배 위원** 그것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좀 전에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지금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 재무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추가적인 할인이나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용 전기요금, 어업용 전기요금같이 소상공인용 전기요금도 특별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쟁점은 정부에서 이 법안 없어도 할 수 있다 또는 법안 없이 하는 게 좀 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올해 보니까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지원을 20만 원씩 하는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 **이종배 위원** 종전에는 3000만 원이었지요, 매출 3000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 **이종배 위원** 그걸 2배 정도 올렸는데, 그만큼 요즘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소상공인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좀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좀 증액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에서는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편성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잘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안 하니까 이걸 제도화시키자 이런 문제인데, 제도화할 때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도 그렇고……

오세희 의원님 안과 박지혜 의원님 안이 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로 어떠어떠어떠한 것들을, 이 지원 항목을 전부 다 나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좀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좀 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허종식 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

○ 소위원장 박성민 예, 위원님.

○ 허종식 위원 차관님, 솔직하게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기재부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저희도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을 통한 전기요금 지원은 사실 금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감면이나 할인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종식 위원 아니, 현재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 허종식 위원 그걸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실익이 없다?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 허종식 위원 별도 법적 근거를 만들더라도 실익이 없다 이게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 허종식 위원 그걸 지원하면서도 그게 실익이 없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근거도 없이 한다? 이건 아니지요. 근거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지원한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안 맞는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 허종식 위원 있어야 하는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산하고 법률은 효과가 같기 때문에 저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꼭 필요했을 경우에 하긴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 허종식 위원 기재부 한번 잘 설득해 보세요.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소위가 이렇게 큰 방에서 하는지 모르고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논의를 위원장님 모시고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전 전기료 인상에 관한 어느 정도 계획 같은 게 좀 수립되어 있나요? 실질적으로 한전 적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전기료 인상을 언제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나경원 위원** 중기벤처부니까 진짜 모르시겠구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죄송합니다.

○**나경원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한전에서는 재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또는 산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인상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사실 많은 분들이 한전 전기료 인상 예정을 걱정하시고 소상공인 이 부분 말씀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법의 규정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전기료 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1호부터 5호까지는 사실은 경영안정, 성장 지원에 있어서 직접적인 거라면 전기료 부분은 조금 약간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라서 이렇게 법적 규정을 만드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늘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예정하고 법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 필요성 있지만 또 일용 이것을 올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세희 위원** 나경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조건 경기도 좋아지고 이게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경기가 회복하거나 좋아졌을 때 대통령령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인데 월 20만 원이 아니라 한 번에 대해서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2500억 정도 가지고 하는 건데 내년

예산에는 없다는 거고. 지금 봐서는 내년에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전기요금은 오르고 또 경기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20만 원이 클까 그려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근근이 하든지 이런 거거든요, 500이 월 매출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취약계층, 국민의힘도 취약계층 지원하자고 많이 얘기하시니까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지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경기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안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하기는 좀 그렇다는 것하고.

저는 오늘 중소벤처부가 얼마나 본인의 입장에서 하는지…… 부동의의 이유로 일반 중소기업, 창업·벤처, 농어민과의 형평성 문제 이야기했어요. 농어민이나 산업계는 산업용으로, 기업은 산업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왜 전통시장만 하나요? 그게 형평성의 문제지요. 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만 해요? 그러면 그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하고 이 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안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그냥 계획안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 기재부가 반대하면 안 하고, 지금 주던 것도 스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부를 신뢰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 놓고 경기가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네 그러면 그냥 안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둬서 거기 근거법에 두고 하자는 얘기고 ‘여기다 맞추면 형평성, 저기다 맞추면 형평성에 안 맞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일관성 있게 소상공인에게 줄 거면 소상공인 매출로 인해서 줘야지 전통은 주고…… 소상공인이거든요. 골목은 옆집인데 불나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옆집은 불타면 안 주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불타면 주고. 이런 법을 만들지 말고 만들 때 지금 정도는 미래지향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나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산업을 알고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 20만 원 주는 건데 지원 근거 만드는 게 이게 이렇게…… 뭐 주자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논쟁이 되어야 되나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저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제발 이름만 팔지 말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소상공인, 소상공인’, 언제 소상공인 도와줬어요, 뭘? 뭘 도와줬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취약계층 도와줘야지요. 뭘 소상공인 도와줘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해요? 그만 좀 파세요, 제대로 된 정책을 하고.

○**송재봉 위원**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송재봉 위원님.

○**송재봉 위원** 지금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소상공인 중에 숫자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대략 한 120만 개 정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체 소상공인이……

○**송재봉 위원** 연매출 6000만 원 이하가 110만 정도요? 120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저희가 그 정도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산 규모가 그렇게 잡혀 있고, 전체 소상공인은 740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의 아주 다는 아니고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사실 연매출 6000만 원이면 영업이익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저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에너지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지원……

○송재봉 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이 되면 전기료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 테고 폭염이라든가 이런 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럴 경우에 실질적인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약자들에 대해서, 특히 소상공인 쪽에는 지원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아니요, 저희가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송재봉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전기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도 있고 저리융자 사업도 있고 특별보증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리는 일을 할 겁니다.

○송재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에너지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크게 작용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이라고 특별히 변경될 여지가 크지 않은데 굳이 ‘내년 지원 예산은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전기료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 전기료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와서 여야 합의로 소상공인들의 에너지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

○송재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기부의 입장에서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필요하지 않다라고……

○송재봉 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 봐도 불리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 법을 반대하고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러면서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논리적 모순이 되잖아요,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법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어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기초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증액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경영 비용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그런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조금이나 또는 저리융자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일부 경영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부분은 법적으로 봤을 때 현행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송재봉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도 편성 안 해 놓고 또 가능하다 그러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소상공인들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리는 여러 가지 사업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지금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그래도 이 문제를 좀 경감해 보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면 논의가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박상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웃음)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게 또 우리 현실이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선진 강국도 아니고 그늘진 데도 많고 또 그 그늘진 데를 전부 누군가의 에너지로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현실이지요.

아까 송재봉 위원님이 차관한테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했더니 약 한 120만이라고 그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전체 숫자로 보면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략 한 120만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대략 추정컨대 한 120만 정도……

여기는 골목상권이나 상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우리가 전기료 감면을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 중에는 아주 영업도 잘하고 백년가게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뭔가 배려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여기서 말한 대로 정부 쪽에서 봤을 때 정말 지원이 불가피하다, 한 6000만 원 정도 미만의 연매출을 갖는 1인 영업장 비슷한 그런 곳을 대상으로 최저생계 수단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0만 소상공인에게 연 20만 원을 지원하면 이게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또 해 봤더니 2400억입니다. 정부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2400억 정도를 가지고 소상공인 중에서 취약계층한테 전기세 20만 원을 1년에 한 번 지원해 준

다, 이런 정도는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서 지금 골목상권이다 상점가다 아니면 그냥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연매출 6000만 원이 아니라 연매출 8000만 원 이렇게 끌어올리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지원 대상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장사할 수단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서……

물론 그것은 중소기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건 행안부나 복지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될 영역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이것을 법안으로 명시하지 말고 2400억을 어떻게 제대로 지출하느냐, 그래서 실제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나 안 있나 하는 현실을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한번……

이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이 일은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400억 이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 금년 예산에 25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 예산을 조금 더 달라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 법안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차관님,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이 통과되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용자 규모로 한 3조 7000억 정도 되고 출연·보조 정도로…… 지출 규모로 전체 한 5조 가까이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현재 지원은 어느 정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용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원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한 2조? 1조 5000억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1조 한 3000억 정도가 출연·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정부에서 그 기금을 예산에서 확충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기금이 규모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기금의 규모를 갑자기 늘리기도 좀 어려우니까 기재부에서는 대개 기금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기금을 확 늘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기재부의 의견 같은데.

어쨌든 이 기금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잖아요, 기금도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똑같이 기금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기금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일반예산과 달리 그래도 그 기금을 운용하는 중기부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기본적으로 중기부가 관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출연·보조 소요가 많아서, 출연·보조 소요는 정부 재정으로 출연을 다 다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중기부가 100%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되는……

○이종배 위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총괄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금보다는 정부에서 출연하는 게 그때그때 출연이 많으니까 기재부에서 출연을 얼마나 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보면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중기부에서는 그 기금을 늘리는 데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 기금을 어디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하고 잘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금을 국회에서 늘리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기금 규모를 여기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건 쉽지는 않을 거다. 지금까지 전례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소상공인들이 이만큼 어려운 걸 감안해서 정부가 기금·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특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전기요금도 오르고 소상공인의 상황도 더 좋아지지 않을 거다 하면 충분히 이런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그런 걸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좀 더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야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같으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데……

저는 사실 아까 박상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재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에너지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 소위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한전이 우리 상임위 산하에 있으니, 저는 전체적으로 이 기후약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약자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어렵다고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어렵다고 저기 조금 주고 이렇게 중구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소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걸 제안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월 매출이 500만 원 정도 같으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물론 재산 상황이나 그게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입별로만 보면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경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20만 원 정도 전기나 가스료가 지원되면…… 월 매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 분들의 월 전기료나 가스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20만 원을 한도로 두고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세 달, 전기를 많이 쓰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맥시멈으로 다 지원이 돼야 되고 전기를 조금 덜 쓰는 그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한 두 달 또 좀 더 적게 쓰는 경우에는 한 세 달, 한 이삼 개월 정도면 20만 원 지원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 소상공인들의 매출 기준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전기료만 그렇습니까? 가스요금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기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월 500만 원 매출 정도면 전기료가 20만 원. 그러면 전기료를 100% 다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연간은 아니고요. 월로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한 달에 그냥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적게 쓰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두 달, 세 달 또는 한 4개월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데 4개월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보고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성민** 김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한규 위원** 사실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상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법에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라 사실은 통과시켜도 나중에 정부가 다 재량을 갖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그냥 이 상태로, 오세희 의원하고 박지혜 의원 2개의 안이 있는데 오세희 의원안이 조금 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 하시면

중기부도 어느 정도 방어한 걸로 할 수 있을 테니 위원장님께서 그냥 여기서 참석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한번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또 다른 의견도 한번 듣고 검토보고도 듣고. 지금 7항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20쪽입니다.

방역조치 기간 중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및 금융기관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와 별도로 장기분할상환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과 또 반대로 대통령령에서 장기분할상환의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는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2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대출을 받은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상환이 가능한 차주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해 주는 강행 규정에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중에 대출받은 차주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이후에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분할상환에 최저 10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곽상언 위원입니다.

거기 중기부 의견을 부동의로 해 주셨고 그 근거를 보니까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만

하면 10년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소상공인들이 분할 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역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걸 상환하겠다고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부당하고 심사를 꼭 해야만 하는 사유인가요? 방역조치를 당할 때도 아무런 의견조차 제시를 못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이든 시중의 금융자금이든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을 해 준 기관과 대출을 받은 차주 사이에 어느 정도 상환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상환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이 법률에 의해서 강행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강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할상환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신청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역조치,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먹고살려고 대출 받은 것이고 대출을 갚겠다고 이렇게 분할상환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 부당한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부당하다기보다는 원래 장기분할상환이라든지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주와 그다음에 대출기관 간에 어느 정도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법률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규정을 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임의규정을 바꾼다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주는 어떤 손해를 보고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까? 그 금액을 환산할 수 있습니까? 추상적인 논의 말고 이 금융기관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기에 부동의하고 반대하는 것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것은 정책금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대출을 해 준 기관인데 현재 코로나 기간 중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출해 준 금액이 대략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 5조 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정부의 다른 기금에서 빌려 와서 이것을 상환한 것인데……

○**곽상언 위원**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분할상환을 해 주게 되면 빌려준 금융기관 혹은, 지금 소상공인금융공단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소상공인시장진흥……

○**곽상언 위원** 거기가, 그 기관이 얼마의 손해를 보게 되냐고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추정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아까 말씀드렸던 5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진공도 자금을 빌려 와서 이걸 대출해 줬기 때문에 빌려 온 기관에다가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이자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이자, 상환 유예를 하거나 분할로 했을 때 추가적인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좀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가게를 잘하고 있는데 ‘가게 문 닫아, 안 그러면 별금 얼마’ 이래서 가게를 문 닫았고. ‘너 6시까지만 장사해’ 그래서 시간 제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를 낮게 줘요. 2%로 해서 그래서 대출을 막 받았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3년…… 20년에 하고 팬데믹 3년 끝나니까 대출이 5%, 7% 이자가 올라 버렸습니다. 또 경기도 경제의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자가 빚이 되고 빚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28만 명 정도, 대출이 5조라고 그러는데 5조는 안 되고 3조 얼마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사례는 뭐냐 하면 국가의 부채가 그때 많이 늘었어요. 국가가 대 줘야 되잖아요. 왜? 국민의 생명 때문에 ‘너 문 닫아’. 우리가 ‘월급 안 나와’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에 근거해서 방역 협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미국은 21%의 부채가 늘었고 캐나다, 독일 이런 데가 국가 부채가 다 20%가 넘습니다, 일본도 18%. 그런데 우리는 6.8%예요.

이런 상황에 협조를 한 거지 소상공인들이 거지 아니에요. 뭐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문 닫으라고 했으면 그 부분은 국민한테 월세도 주고 인건비도 줘야 될 상황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줬단 말이지요. 그분들은 가게에서, 큰 가게는 저보고 오죽하면 ‘10억을 빚겼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왜? 가게가 크면, 강남 같은 데도 크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게가 크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봐서 코로나 때에 영업 제한을 받고 가게 문 닫은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 그냥 앞뒤 자르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지원해 달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의 국가에서 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연체된 차주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국가가 탕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연장. 그러면 또 그분이 대출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리의 이자로 대출 연장을 하자는 취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자, 또 다른……

○송재봉 위원 저도……

○소위원장 박성민 송재봉 위원님.

○송재봉 위원 제가 볼 때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 자금이 빌려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차관님.

아마 소진공에서도 자금을 빌려 왔으니까 이자 부담이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장기분할로 대출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자를 안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가 볼 때 제로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소진공이 좀 더 이익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 양쪽을 균등하게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서 들어오는 이자와 또 빌려 온 돈 때문에 나가는 이자, 양자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정말 손해인가. 그것을 좀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고이율의 이자 를 내면서 계속해서 부채를 지고 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굳이 자기가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서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이자 부담을 내는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기우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도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부채 부담을 계속 늘려 가려는 분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한다거나 기간을 단축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낼 거냐, 이 판단의 기준도 사실 불명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시기에 부채가 발생한 이유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다중 부채가 늘어나고 또 채무 불이행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로 인해서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이분들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에 우리 사회 전체가 져야 될 부담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응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무작정 반대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의 손익을 계산해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출 기간을 장기로 연장해 주는 것이 절대 국가적으로나 소상공인 당사자에게나 불이익이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좀 다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장기분할상환제도 자체는 저희가 당연히 동의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정법률안에서처럼 이 제도가 설계된 것들이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보이고 그다음에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고 또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서 검토해 주시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부득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분들,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그 방역 기간 동안에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늘려 줘야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4항에 정해 놨는데 이것은 1항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면 1항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심사를 거쳐서 그로 인한 피해인지 이런 것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일괄해서 10년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7년에서 15년 사이로 좀 나눠서 내게 한다든지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청만 하면 10년 이상 이것도 좀, 저는 너무 일괄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낼 수 있으면 물론 빨리 털어서 내겠지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책자금 저리자금이라고 한다면 더 늘리는 것도, 그분들에게 재산상 이익이 갈 경우에 늦게 상환을 할 때는 다른 소상공인분들이 또 이 자금을 가지고 빌려서, 대출해서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 가지고 대출을 많이 못 해 주면 다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좀 받아서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4항의 법률안은 공포일만 조정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4항의 법률안부터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항 법률안은 공포일만 변경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부터 7항까지 3건의 법률안입니다. 3건의 법률안인데……

차관님, 오늘 회의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여야 할 것 없이 위원님들은 소상공인들 관련해서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기재부와 또 다른 부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오늘 김한규 위원님은 지금 의결하자고 하시는데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다음에 정부 측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지금 예산 수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법안들이 최소한 소위 정도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11월 달에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현실적으로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도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오늘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장님 표정을 보니 첫날부터 꼭 그래야 되느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아서 다음 소위 때 이것을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것 약속하실 수 있지요, 다음 소위 때 하시는 것? 지금 어차피……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상웅 위원 다음 소위 때 논의하는 것으로 괜찮다고……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 소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뭐 할 것도 없이……

○**오세희 위원** 그래도 아니지요. 여기서 위원장님이 통과 안 시키면 저희가 안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이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첫 번째 안으로 계속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차관님께 한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권향엽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은 다음 법안소위 때 우선 논의 법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차관님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전기료 지원은 올해에 한해서만 한다는 그 입장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발견도 됐고요. 사실은 한전과 이런 데를 통해서 감면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논의의 진전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세제 감면 혜택 말씀했는데 임대료 같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중소기업부에서는 이 전기료 감면과 관계되는 것 자체는 예산 반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하는 등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 와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제가 관계부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그러니까 심도 있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는 뭔가 성과를 좀 가져오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은, 코로나 시절을 겪었던 소상공인들 보면서 그 이후나 그 이전의 소상공인하고 형평성 논리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소위원장 박성민** 자,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소위원회 때 이 안을 제1안으로 꼭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및 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곽상언 권향엽 김종민 김한규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송재봉 오세희 이종배
허종식

○출장 위원(1인)

김성원

○첨가 위원(1인)

김정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충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정책기획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